

[별표 4] <개정 2004.4.19, 2006.1.17>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(제20조관련)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	소 독 횟 수	
	4월부터 9월까지	10월부터 3월까지
1. 호텔 및 여관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2.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) 3.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4.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·대형점·백화점·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5. 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	1회 이상/1월	1회 이상/2월
6.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.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. 공연장(300석 이상) 8의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9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학원(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) 10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1. 「영·유아보육법」에 의한 영·유아 보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의한 유치원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·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)	1회 이상/2월	1회 이상/3월
12.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	1회 이상/3월	1회 이상/6월